

80年度 檢査業務改善方向

檢査理事 威 在 胤

漁船協會가 設立된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漁船檢査制度的 確立을 위하여 맡은바 責務를 다하고저 盡力한바 있으며 關係機關과 漁民에 이르기까지 檢査의 必要性和 重要性이 차츰 認識되어 가고 있는 實情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確固한 檢査業務의 定着을 위하여는 많은 問題點이 改善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擡頭된 여러 問題點을 1980년에는 그 一部라도 改善하도록 努力하므로써 漁民이 便利하게 또한 漁民의 財産과 人命의 被害豫防이 될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改善코저 한다.

첫째는 漁船檢査關係法令과 規程을 整備하고자 한다. 지난 한해동안 漁船檢査를 實施해본 結果, 現在 規程되어 있는 法令과 規程을 適用함에 있어 現實적으로 不必要하거나 또는 適合하지 않은 規程과 必要한 規程인데도 漏落되어 있는 關係規程을 補完하여 水産廳에 建議하고 이를 早速한 時日內에 改正하는 作業인 것이다.

이는 漁民의 安全操業과 人命財産의 被害豫防에 至極히 必要한 部分은 補完을 하여 裝備의 改善를 圖謀하고 不要不適한 設備은 除外하므로써 漁業의 經營合理化에 寄與되도록 할것이다.

둘째는 正確하고 徹底한 檢査를 迅速하게 執行하여 漁民에게 便宜를 提供하는 檢査體制가 되도록 努力하여야 할것이다.

지난해에는 本會의 豫算上 事情으로 因하여 充分한 檢査員을 確保하지 못한 實情이므로 많은 業務量을 執行하는데 時間이 많이 所要되므로써 漁民의 不便이 많았다고 生覺된다. 今年에는 迅速하고 正確한 檢査를 實施하기 爲하여 優秀한 檢査員의 確保와 漁村契項 地區別水産業協同組合과 事前協議하여 地域別 季節別로 集團檢

査業務를 보다 發展시키므로써 漁船檢査申請의 簡素화와 檢査期間을 短縮시켜서 漁民의 便宜와 負擔을 輕減시키도록 努力한 計劃이다.

셋째 本會執行民願業務를 支部에 優秀한 技術人力을 補強하여 段階別로 移管시키므로 迅速한 檢査執行이 되도록 推進할 計劃이다. 現在 本會에서 執行하고 있는 20M以上の 積量測定表作成, 製造檢査 및 豫備檢査에 따른 圖面承認, 復原性判定, 滿載吃水線指定 등의 業務를 段階別로 支部에 移讓할 計劃인 것이다. 그 1段階로 1980年 4月 1日부터는 釜山支部에 20M以上 漁船의 積量測定業務와 製造檢査 및 豫備檢査에 따른 圖面承認業務를 移管할 計劃이며 第2段階로는 1980年 7月 1日 以內에 仁川과 麗水에 20M以上 漁船의 積量測定業務를 移管하고 檢査人力이 確保되는대로 充分한 教育을 시켜 全支部 및 出張所에 本部의 執行業務를 移管하여 漁民便宜의 檢査業務執行이 可能하도록 執行할 計劃인 것이다.

네째 檢査員의 資質向上 및 庶政刷新을 爲한 教育을 實施할 計劃이다.

當會 檢査員 및 關係職員은 民願業務를 取扱함으로 漁民의 奉仕者로서의 姿勢를 確固히 하여야 하므로 올해에는 全 檢査員들에게 새마을 教育을 實施하고 精神教育을 強化하여 民怨의 對象이 되지 않도록 하고 不條理剔快에 率先垂範토록 할 것이며 高度의 技術을 要하는 漁船檢査業務를 圓滑히 遂行하기 爲해서는 4級以下 檢査員에게 檢査業務에 關한 技術全般에 對한 教育을 實施할 計劃인 것이다.

다섯째 對漁民 民願相談을 爲한 弘報活動을 強化할 計劃이다.

全支部長 및 出張所長은 當該支部 및 出張所에 漁民의 소리函을 設置運營함과 同時 民願相談室을 運營하여 漁民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正

確히 把握해서 漁船檢査에 周着을 期하도록 할 것이며 全檢査關係職員은 恒常 親切한 奉仕姿勢로서 各種 檢査申請書의 無料提供 및 無料代書等を 實施하므로써 代書所를 通하여 發生할 수 있는 모든 不條理를 事前에 防止할 수 있도록 推進할 計劃인 것이다. 위와 같이 80年度에는 本會 設立 第2次年度로서 檢査業務의 定着을 爲하여

最善을 다하며 名實共히 漁民의 奉仕者로서의 協會像을 具現할 때이므로 檢査關係職員은 모름지기 確固한 信念으로서 주어진 業務處理와 改善에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漁民 여러분도 이러한 當會의 檢査業務執行에 積極的인 業務協助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투 고 요 령 *

어선행정과 기술에 관하여 어민과 정부의 가교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거 원고를 모집하고 있어 많은 성원과 이용을 바랍니다.

1. 원고내용 : 어선행정과 기술에 관한 연구논문, 자료, 나의제언, 질의 및 어민 여론이 광장 등으로써 다른 잡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
2. 원고작성 : 200자 원고지(매수는 제한없음)
3. 제출기간 : 수시
4. 원 고 료 : 채택된 원고에 한하여 소정의 고료를 지급함.
5. 편집요령 : 원고의 채택여부 및 자수의 가감 수정은 본회 심사에서 결정하여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6.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2-37

유미빌딩 6층

전화 792-8072

한 국 어 선 협 회